

변경대비표

펀드명 : 도이치 브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변경시행(예정)일: 2016.02.29

정정사유: 펀드과세 합리화 및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정정

1. 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

항목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14. 이익 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분배 ①	<p>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</p> <p>단,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<u>“零(0)”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하며,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 2. <u>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u> 	<p>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</p> <p>단,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<u>“零(0)”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하며,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 2. <u>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u>
제 2 부. 14. 이익 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2) 투자자에 대한 과세 : 원천징수 원칙	-	<p>[신설]</p> <p>※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</p> <p>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7 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해외주식투자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매매·평가 손익(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)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</p> <p>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, 주식배당, 환해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, 투자자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-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·평가 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·평가 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, 주식배당, 환해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함.</p>

		<p>※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</p> <p>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※ 동 집합투자기구는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.</p>												
제 2 부. 14. 이익 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4)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 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	-	<p>[신설]</p> <p>(4)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</p> <p>조세특례한법 제 91 조의 17 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·평가 손익(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)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됩니다. 자세한 관련사항은 "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]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주요내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입기한</td><td>2017년 12월 31일까지</td></tr> <tr> <td>가입한도</td><td>1 인당 3 천만원 (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)</td></tr> <tr> <td>대상펀드</td><td>조세특례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%이상 투자하는 펀드 (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)</td></tr> <tr> <td>세제혜택</td><td>해외상장주식의 매매·평가 손익(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)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</td></tr> <tr> <td>세제혜택</td><td>가입일부터 10년까지 적용기간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내용	가입기한	2017년 12월 31일까지	가입한도	1 인당 3 천만원 (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)	대상펀드	조세특례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%이상 투자하는 펀드 (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)	세제혜택	해외상장주식의 매매·평가 손익(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)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	세제혜택	가입일부터 10년까지 적용기간
구분	주요내용													
가입기한	2017년 12월 31일까지													
가입한도	1 인당 3 천만원 (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)													
대상펀드	조세특례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%이상 투자하는 펀드 (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)													
세제혜택	해외상장주식의 매매·평가 손익(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)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													
세제혜택	가입일부터 10년까지 적용기간													

2. 간이투자설명서

항목	정정전	정정후												
-	-	<p>양식 전면 개정 신규 기업공시서식 적용</p>												
III.1. 과세	-	<p>※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한법 제 91 조의 17 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·평가 손익(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)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됩니다. 자세한 관련사항은 "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]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주요내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입기한</td><td>2017년 12월 31일까지</td></tr> <tr> <td>가입한도</td><td>1 인당 3 천만원 (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)</td></tr> <tr> <td>대상펀드</td><td>조세특례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%이상 투자하는 펀드 (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)</td></tr> <tr> <td>세제혜택</td><td>해외상장주식의 매매·평가 손익(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)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</td></tr> <tr> <td>세제혜택</td><td>가입일부터 10년까지 적용기간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내용	가입기한	2017년 12월 31일까지	가입한도	1 인당 3 천만원 (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)	대상펀드	조세특례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%이상 투자하는 펀드 (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)	세제혜택	해외상장주식의 매매·평가 손익(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)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	세제혜택	가입일부터 10년까지 적용기간
구분	주요내용													
가입기한	2017년 12월 31일까지													
가입한도	1 인당 3 천만원 (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)													
대상펀드	조세특례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%이상 투자하는 펀드 (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)													
세제혜택	해외상장주식의 매매·평가 손익(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)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													
세제혜택	가입일부터 10년까지 적용기간													

3. 집합투자규약

항목	정정전	정정후
제 33 조(이익분배)	<p>①~② [생략]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 투자업자는 이익금이 "零"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p>	<p>①~② [현행과 동일]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"零(0)"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 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 이익